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71 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권칠승·박용갑·박 정

서미화 · 문금주 · 전진숙

송옥주 • 민병덕 • 윤종군

한민수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·문화·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이 개최·운영되고 있음. 이는 시장에 특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, 많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.

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,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·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·판매 등 지역사회, 문화,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·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제26조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·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·판매 등 지역사회, 문화, 관광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공동사업의 활성화) 정부	제26조(공동사업의 활성화)
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	
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	
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	
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	
조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시장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
	<u>매매·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</u>
	•판매 등 지역사회, 문화, 관
	광에 관한 사업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